

문서번호	인재원-4713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8.11.14.
공개여부	공개

차장	팀장	인재원장	경영전략본부장	
협 조				

---

## 서울시설공단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개정(안)

---

2018.



인재원

# 서울시설공단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개정(안)

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 최근 한층 강화된 법률 및 관련 지침과 연계하여 기존 공단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개선·보완, 성희롱·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

## 1 추진 근거
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(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)
- 성희롱·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49호, '18.3.21)
- 2018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(여성가족부)

## 2 주요 개정내용

### 1 지침 적용범위 확대 신규

- 조직 내 성희롱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항 함께 규정
  - 지침의 명칭을 '성희롱 예방지침' → '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'으로 변경, 관련된 모든 규정 내용에 성폭력을 함께 병기
    - ※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정('16.11)으로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반영
-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예방대상 확대
  - 소속 구성원 뿐 아니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확대
  - 보호 대상인 피해자 범위를 피해 주장자,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까지 포함

### 2 상급기관의 관리·감독 강화 신규

- 가해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 등이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, 상급기관인 市에서 조치
  - 해당 기관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여지 차단

### 3 고충상담 및 조사 방법 개선 보완

- 고충상담창구 정비
  - 기존 '고충전담창구'를 대외적으로 통용되는 '고충상담창구'로 변경
  - '사이버신고창구' 운영에 대한 의무·근거규정 마련
- 「조사」의 실효성 확보
  - 상담과 달리 서면으로써 신청,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
  - 고충사건 조사기간 연장 20일→30일
- 고충상담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지원
  - 전문교육훈련의 시기와 횟수 명시 (신규 임명시 3개월 이내 전문교육 이수)

### 4 2차 피해예방 강화 강화

-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명확화 및 지원
  -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 열거
  - 법률 서비스 등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근거 마련
- 피해자 불이익 발생시 처벌 강화 명시
  - 2차 피해 관련자는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규정 명시
  -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미이행시 관련자 문책 근거 마련
  - 가해자가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행위 사전 차단

### 5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정비 보완

- '성희롱 심의위원회' → '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' 명칭 변경
- 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 정비 (구체적 명문화)

## 3 행정 사항

- 해당 개정안 확정 : 본부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공유 : 게시판 게시

붙임 : 1. 성희롱·성폭력 신고조문 비교표 1부.  
2.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1부  
3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. 끝.